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령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2. 10. 31. C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3. 2. 28. C으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5,000,000원(= 110,0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피고, D은 2023. 2. 28.경 D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3자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밖에 없으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녹취록(을 제4호증)에 의하면, D이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로서는 위 채무인수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승낙해 줄 어떠한 동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인수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